

사전재난영향평가 재평가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시		처리기간	
				30일	
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현황	건축물 구분	[] 초고층 건축물 [] 지하연계 복합건축물			
	설치등 구분	[] 신축 [] 증축 [] 개축 [] 재축 [] 이전 [] 대수선 [] 용도변경			
	건축물 명칭				준공일
	건축주	성명			연락처
		주소			
	대지 현황	대지 지번			대지면적 m²
	건축물 현황	면적 연면적 m², 건축면적 m²			용도
		층수 지상 층, 지하 층			수용인원 명
		지하역사 명칭			
		지하도상가 명칭			
사전재난영향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		0000. 00. 00. ※ 사전재난영향평가 최초 통보일 기재			
재평가 신청 사유					

「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6조제4항,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1항에 따라 사전재난영향평가 재평가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시·도지사 귀하

첨부서류	재평가 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		수수료 없 음
처 리 절 차			
신청서 작성	→	신청서 접수 및 심의 요청	→
신청인		시·도	
		심의	→
		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	
		통보	→
		시·도	